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체 회원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8020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회원조합의 의결권 구체화(안 제11조의4)

- 1) 중앙회장 선출 시에 적용되는 총회 의결권 수를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로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7, 제13조 및 제22조)

- 1) 중앙회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 중 개정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2)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등기 관련 조문 정비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규제 완화(안 제11조의5)

- 1)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의 경우, 퇴임 또는 퇴직 후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라. 개정 누락사항 등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 3)

1) 제51조의3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문의 종전 개정사항
반영

2) 별표 3 제명의 표기 오류 정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
2.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제11조의5제1항제1호라목 중 “5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11조의7제1호 본문 중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사람.”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1조제7항”을 “법 제131조제6항”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본문 중 “사람.”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다.

제51조의3제7호 중 “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따른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중앙회”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호 관련)”을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7,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u>② 법 제130조제1항에서 “조합 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u> <u>1.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u> <u>2.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u>
<u>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u> ----- ----- ----- ----- -----.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 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 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 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 정한다.</u>	<u>④ 제3항</u> ----- ----- ----- ----- ----- -----.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 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 건 등) ① ----- -----

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 다. (생략)

라.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의 지난 사람

2.·3. (생략)

② (생략)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조합 또는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3년
의-----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

1 .

-----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 5. (생략)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람 <단서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6항-----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 ----- ----- -----.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연합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 ----- ----- ----- ----- ----- ----- ----- ----- ----- 사람 <단서 삭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7조에 따른 상환준비금의 예치 <u>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u>: 2017년 1월 1일 8. ~ 13. (생략) 14. 제12조에 따른 <u>다른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u>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5. ~ 30. (생략)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비율:</u> ----- ----- 8. ~ 13. (현행과 같음) 14. ----- <u>중앙회</u> ----- ----- ----- ----- 15. ~ 30. (현행과 같음)
---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12.11>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젓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57